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6. 20.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제 1529호
----------	---------

2019.6.20.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9. 5. 17.
- 나. 회부일자 : 2019. 5. 24.
- 다. 상정일자 : 2019. 5. 29.

## 2. 제안설명

가. 제안설명자 : 최한철 기획경제국장

### 나. 개정이유

변경된 정부조직 부처명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다.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를 ‘행정안전부’ 로 변경  
(안 제5조제3항, 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 나. ‘지방보조금의 집행’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 보조금에 대한 별도 계정 설정 및 수입과 지출의 구분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

##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제1항제8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2019. 3. 28. ~ 4. 17.) 결과 : 의견 없음.

##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김기영)

○ 의안번호 제152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5월 17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현행 명칭대로 적용하고, 지방보조금의 집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적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자 제출되었음.

○ 주요 내용은

### 가.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제3항, 안 제29조제1항, 제2항)

- 「정부조직법」은 2017. 7. 26. 국가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갖는 조례제정권은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시의성 있게 조례에

반영하여야하는 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대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 법적안정성과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므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됨.

## **나. 지방보조금의 집행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 안 제20조의2는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하‘예규’라 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집행하여야하므로 이러한 예규의 주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지방보조금의 집행이 이루어지게 하고,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방법을 현행 예규의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외에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임.
- 현재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해 사업 홍보와 가맹점 모집을 하고 있고, 향후 법인용 제로페이앱을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 사업예산 중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 집행 역시 제로페이로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sup>1)</sup>함으로써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 : 8억원 이하 결제시 0%, 12억원 이하 결제시 0.3%, 12억원 초과 결제시 0.5%

##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명칭을 상위법령에 따라 현행에 맞도록 변경하고 상위기관 예규에 부합하는 지방보조금 집행 관련 사항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보조금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 또한 상위 예규의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도 지방보조금 집행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 5. 토론

- 회의록 참조

## 6. 심사결과

-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